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64
------	-----

2023. 12. 1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상한)

가. 제안이유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가 없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

-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하향하고, 위원 자격 규정을 정비함

Ⅲ.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향하는 등 당연직 위원 자격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됨.

나.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 책임운영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관의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임.
- 서울시는 2008년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이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역사박물관, 교통방송 등 3개 사업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 하였으나, 교통방송이 2020년 2월 TBS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지정 해제되었음.

<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

구분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기 관 장	3급(개방형)	3급(개방형)
기 구	2부 11과(연구소·관 포함)	3부 8과(1분관)
인 력 (정/현원)	102명 / 98명	96명 / 92명
예 산 (2023년)	15,449백만원	20,015백만원
기 능	- 서울의 역사·문화의 전시와 교육, 과거·미래유산 수집과 보존 - 서울학·박물관학 연구 - 국내외 박물관 교류 등	- 미술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 국내외 미술관 교류,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등

- 현재 서울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 3개년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임.
- 참고로 책임운영기관은 시장에게 부여받은 사업목표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승인 후 기관장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정비(안 제9조 제4항 및 제5항)

- 안 제9조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하향하고, 현재의 상설 위원회를 안전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개최실적은 1회이며, 최근 5년간('19년~'23년)을 보더라도 개최 횟수는 총 6회에 불과함(연평균 1.2회).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구 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최횟수	1.2회	1	1	2	1	1

- 특히 ‘2023년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에 따르면,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비상설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설화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가 향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지금보다 위원회의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입법 조치라 하겠음.

- 한편 동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면서 문화본부장, 정책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위원별 위원회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의 경우 ‘다른 일정’ 등의 사유로 불출석이 잦고, 대리 출석을 제외하면

위촉직 위원보다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있음(최근 5년간 대리참석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은 평균 56.8%임).

<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참석률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개최횟수			1회	1회	2회 (서면 포함)		1회	1회
참석 현황	위원회 전 체	참석대상	11	11	10	10	10	10
		참석인원	6(8)	5(7)	9	7(8)	9	7
		참 석 률	55%(73%)	45%(64%)	80%(85%)		90%	70%
	당연직	참석대상	4	4	3	3	3	3
		참석인원	1(3)	1(3)	3	1(2)	2	3
		참 석 률	25%(75%)	25%(75%)	67%(83%)		67%	100%
	위촉직	참석대상	7	7	7	7	7	7
		참석인원	5	4	6	6	7	4
		참 석 률	71%	57%	86%		100%	57%

※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 중 ()는 대리참석을 포함한 수치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하고, 하위 직급자의 대리출석으로 인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사항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원회가 비상설화됨에 따라 위원들이 자주 교체될 경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사업계획 등의 심의에 있어 일관성이 저하되고 행정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개정안에 따른 당연직 직급 조정 ＞

	현행	개정안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위원	문화본부장	박물관과장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간사	조직담당관	조직기획팀장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가 없는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

- 안전 발생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책 기획관으로 하향하고, 위원 자격 규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4.13.~5.3.)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정상영(☎2133-673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이 되고”를 “정책기획관이 맡고”로, “자가 된다”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u>기획조정실장이 되고</u>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가 된다</u> .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정책기획관이 맡고</u> - ----- <u>사람</u> <u>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u> <u>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u> .
1. <u>책임운영기관 감독부서의 본</u> <u>부장 · 국장 및 정책기획관</u>	1. <u>서울특별시 소속 업무관련 4</u> <u>급 이상 공무원</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⑤ <u>제4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3</u> <u>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	⑤ <u>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u> <u>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u> <u>산한다</u>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의 자격 규정 정비는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정상영 (☎ 2133-6732)